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본 승인안은 2018년 9월 1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8년 10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1. 제안이유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188,352천원으로서, 이 중 12건에 1,619,284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연번	예비비지출 사유	지출결정액	비고
계	12건	1,619,284	
1	평창운수(주) 노조파업에 따른 대체버스 운행	210,000	
2	고병원성AI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20,000	
3	평창운수(주) 노조파업에 따른 대체버스 운행	153,900	
4	평창운수(주) 노조파업에 따른 대체버스 운행	178,880	
5	고병원성AI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방역	28,000	
6	가뭄장기화 해소를 위한 관수시설 지원	60,000	
7	가뭄장기화 해소를 위한 관정시설 지원	16,000	
8	가뭄장기화 해소를 위한 관수시설 지원	147,200	
9	7.2~7.11 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200,000	
10	우박피해에 대한 농가 재난지원금	2,921	
11	소송패소에 따른 휘닉스중앙 배상금 상환	479,000	
12	9. 7 환경미화원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123,383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예비비 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의 지출사항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188,352천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총 12건에 1,619,284천원이 지출결정되었고, 그 중 1,450,002천원이 지출되고 169,28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예비비 편성과 지출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한 결과 2017년도 예비비는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 ▶ 평창운수(주)노조파업에 따른 대체버스 운행(3건) 542,780천원,
 - ▶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긴급방역(2건) 48,000천원,
 - ▶ 자연재해(가뭄, 호우, 우박)로 인한 지원금(5건) 426,121천원
 - ▶ 환경미화원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1건) 123,383천원 등은 예측하지 못한 재난발생과 긴급사항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 ▶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479,000천원은 판결 선고일이 2017.4.13일로 제2회 추경예산(2017.9.15의결)에 편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예비비에서 지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향후 예측 가능한 소요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추경 등)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1 범위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